

화순군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안)

의 安	
번 호	

발의 년월일 : 1996. 4.

발의자 : 홍이식 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 주민의 대외기관인 의회에는 진정서등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이의 처리규정이 없어 단순히 집행기관등에 이송 처리하고 있는바
- 이의 처리절차등을 명확히 하여 접수된 진정서등을 일련의 절차에 따라 신속 정확히 처리키 위함

2.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제2조)

진정서등이라 함은 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을 말함

○ 불수리 사항 (제4조)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것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을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진정서 등의 처리 (제5조)

-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 5일 이내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군수, 전라남도 지사 및 기타 기관의 장에 이송
-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 이내에 의견서를 의장에게 제출

- 소관 위원회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때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
- 진정인등에 대한 통지 (제6조)
 - 위원회 의결사항
 - 군수에게 이송된 진정서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사항

화순군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안)

화순군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군의회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등을 말한다.

제3조 (접수) 군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제4조 (불수리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것
 3.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것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 (진정서등의 처리) ①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과 군수, 전라남도지사 및 기타 기관의 장등에게 이송 처리할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 5일이내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군수, 전라남도지사 및 기타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위원회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때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6조 (진정인등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의결사항
2. 군수에게 이송된 진정서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사항

제7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